

품질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27일
신고인	인증기관명(기관지정번호)		
	대표자 성명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	
	소재지	전화번호	
변경내용 (※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)	구 분	당 초	변 경

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기관 지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

첨부서류	1. 지정서 원본 2.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------	---

